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01
----------	------

2013. 07. 05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월 6월 14일 이경애·전철수 의원 공동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18일
- 다. 상정 및 의결 일자
  -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3. 07. 05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이경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(안 제7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#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3. 6. 14일 이경애·전철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. 6.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.
- 이미 결정된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·결정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주민 서면 통보,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,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).
-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중 정비구역면적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면적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 규모를 각각 5퍼센트 미만으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<경미한 변경 결정권한>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12조 및 조례 제7조제2항)

시 장	구청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정비구역면적의 10% 미만의 변경</li><li>▶정비기반시설 위치변경, 규모 10% 미만의 변경</li><li>▶건폐율·용적률 축소, 10% 미만의 확대</li><li>▶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 등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정비구역 면적 3% 미만의 변경</li><li>▶정비기반시설 규모 3% 미만의 변경</li><li>▶건폐율·용적률 축소, 5% 미만의 확대</li><li>▶건립 세대수 30% 이내 증가, 10% 이내 축소 등</li></ul>

- 구역면적 변경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할 경우 기 결정된 정비구역의 사업성이나 동의율 등의 이유로 해당 주민의 의사와는 달리 구역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등 권한 남용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,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을 시장이 할 경우, 정비구역의 실질적 제반 여건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, 시와 구청간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, 사업시행기간의 단축, 사업비 부담 경감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3퍼센트”를 각각 “5퍼센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영 제1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 <u>3퍼센트</u> 미만의 변경</p> <p>2. 영 제12조제2호의 정비기반시설 규모 <u>3퍼센트</u> 미만의 변경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7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</p> <p>1. ----- <u>5퍼센트</u> 미만의 변경</p> <p>2. ----- --- <u>5퍼센트</u> 미만의 변경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